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296

발의연월일: 2025. 5. 1.

발 의 자:이병진・박용갑・김동아

허성무 · 주철현 · 송옥주

권향엽 • 이원택 • 이상식

서삼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하한 가격 예시 및 농수산물의 유통조절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이와 관련 하위 법령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산물수 급조절위원회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농수산물 수급조절은 국민 식탁물가와 직결되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능도 자문기구에 그쳐 그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수산물 수급조절 역시 중요한 바, 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

정하고 그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한편, 수산물수 급조절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·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, 농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과국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4 신설,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조의4(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) ①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,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각각 둔다.
 - ②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(이하 "수급조절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농수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
 - 2.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
 - 3.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
 - ③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

수 있다.

- 1. 회의 일시 및 장소
- 2. 출석위원
- 3. 심의내용
-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"협의하여야"를 "협의한 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"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"협의"를 "협의한 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현 행 <신 설>	제5조의4(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) ①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 조절위원회를,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각각 둔다. ②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(이하 "수 급조절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농수산물의 수급상황 판단	
	1. 농수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.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.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 절명령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농수산물의 수급조 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	
	<u>부치는 사항</u> ③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과	

제8조(가격 예시) ①·② (생 략)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.

- 1. 회의 일시 및 장소
- 2. 출석위원
- 3. 심의내용
-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있다.
- ⑥ 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가격 예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(3)	 		
	 	헍	의 하

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10조(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 령) ① (생 략)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 산부렁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 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 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 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 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 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 는 유통조절명령(이하 "유통명 령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③ ~ ⑤ (생 략)

<u> 거쳐야</u>
④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
령) ① (현행과 같음)
②
처이된 중 스그그러
<u>위원회의 심의</u>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